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8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임기 정비(안 제3조, 제3조의 2)
- 나.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변경(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 다.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67조)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급자 범위를 세분(안 제27조, 제36조)

마.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조항정비
(안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36조,
제38조, 제72조, 제73조, 제90조의 2, 제9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재정법」 등 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포함
하도록 하여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 명문화, 심의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배제 등 심의회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 하였으며, 특히,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의견을 유도하고,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한 회의내용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38조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일반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문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영등포구가 2003.12.31.이전부터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되,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 하였으나 그 시기를 2012.12.31. 이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2015.9)을 반영 한 것이며, 이는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다른 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 안 제27조제5항은 재산 대부료 요율 산정기준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로 세분화하고,

- 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73조는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제67조에 따라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며,

- 안 제67조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외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외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재정법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